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649
----------	------

발의연월일 : 2024. 10. 11.

발 의 자 : 민병덕 · 이수진 · 한민수
김재원 · 이기현 · 황명선
김현정 · 이언주 · 권칠승
윤준병 · 박홍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 건설위탁의 경우 거래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표준계약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공분야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공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

3조의2제9항 및 제30조의2제5항 신설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등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제30조의2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까지의”를 “제8항까지의”로 한다.

⑤ 제3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위탁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① ~ ⑧ (생략)</p> <p><u><신 설></u></p>	<p>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① ~ ⑧ (현행과 같음)</p> <p><u>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등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u>1. 국가, 지방자치단체</u></p> <p><u>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u></p>
<p>제30조의2(과태료) ① ~ ④ (생략)</p> <p><u><신 설></u></p>	<p>제30조의2(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p> <p><u>⑤ 제3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u></p>

⑤ ~ 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한다.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⑨ -----제8항까지의---

-----.